# 1월 2월 부동산세법 7주차 수업 자료

메가랜드 이송원 교수

# 양도로 보는 경우

|              | 구 분     | 사실상 이전 | 유상      | 양도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|
| 매매, 교        | 환       | 0      | $\circ$ | 0  |
| 법인에 다        | H한 현물출자 | 0      | 0       | 0  |
| 대물변제(위자료=매매) |         | 0      | 0       | 0  |
| 부담부 채무인수     |         | 0      | 0       | 0  |
| 증여           | 채무인수 이외 | 0      | ×       | ×  |
| 공매, 경매, 수용   |         | 0      | 0       | 0  |

#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

|        | 구 분             | 사실상 이전  | 유상         | 양도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       | 무상이전            | 0       | ×          | ×     |
| 양도담보   | 일반적인 경우         | ×       | 0          | ×     |
| 8고급모   | 채무변제에 충당        | $\circ$ | 0          | 0     |
|        | 지목과 지번의 변경      | ×       | ×          | ×     |
| 환지처분   | 보류지 충당          | 0       | ○<br>(공사비) | ×(특례) |
|        | 공유물의 단순분할       | ×       | ×          | ×     |
| 재산분    | 할청구 소송에 의한 분할   | ×       | ×          | ×     |
| 매매원인 - | 무효 소로 인한 소유권 환원 | ×       | ×          | ×     |

# 양도 및 취득시기

| 구         | <b></b><br>七 | 양도 및 취득시기  |  |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|--|
| 원 칙       |              | 사실상 대금청산일  |  |  |
| 대금청산일이 불  | 분명한 경우       | 등기접수일  |  |  |
| 대금청산 전에 스 | 노유권 이전 등기    | 등기접수일  |  |  |
| 장기할부조건부   | 매매           | 1. 2. 3. 중 빠른 날<br>1.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<br>2. 인도일<br>3. 사용수익일 |  |  |
| 자기가 건설한   | 허가 받음        | 사용승인서 교부일  |  |  |
| 건축물       | 허가 받지 않음     | 사실상 사용일  |  |  |
| 상속으로 취득   |              | 상속개시일  |  |  |
| 증여로 취득    |              | 증여를 받은 날   |  |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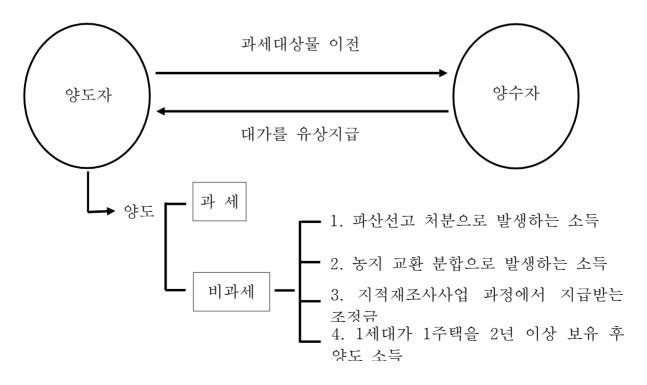
#### 양도 및 취득시기

|              | 구 분             | 양도 및 취득시기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완성 또는 확정되    | 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|                    |  |
| 취득한 경우 대금    | 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 |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|  |
| 완성 또는 확정되    | 지 않은 경우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환지처분으로 인하    | h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| 환지 전 토지 취득일        |  |
| 장기점유에 따른     | 취득              | 점유개시일              |  |
| 법원의 무효판결료    | · 환원된 자산의 취득    |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      |  |
| 취득시기 의제      | 부동산 등           | 1985년 1월 1일        |  |
| [파투시기 위세<br> | 주식 등            | 1986년 1월 1일        |  |

### 양도 및 취득시기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양도 및 취득시기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                | 대금을 청산한 날  |  |  |
|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               | <ol> <li>2. 3. 중 빠른 날</li> <li>대금청산일</li> <li>수용개시일</li> <li>등기점수일 중 빠른 날</li> </ol> |  |  |
|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<br>하지 않은 경우 |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<br>본다.   |  |  |

### 양도소득세 비과세



####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도 과세되는 경우

- 1.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(고가주택)
- 2. 미등기 양도자산
- 3. 허위계약서 작성(①과 ② 중 **적은** 금액)
- ① 허위표시금액
- ② 산출세액

####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

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,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( 3 )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[새로운 농지 취득 후 ( 3 )년 이내에 법령에 따라 수용 등이 되는 경우 포함]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( 1/4 )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.

#### 1세대 1주택 비과세

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(2) 년 이상인 것(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(다주택자는 최종 1주택만을 보유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)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(2)년 이상인 것)을 말한다.

#### 거주자와 배우자의 세대구성

|             | 세대 구성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부부가 각각 세대를  | 동일 세대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거주자와 배우자가 빌 | 동일 세대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| 원칙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부부가 이혼한 경우  |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| 돈이 계리 |
|             |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| 동일 세대 |

####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

| 구 분  |
|--|
|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( 30 )세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|
|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( 40% )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 |

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·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

### 주택과 딸린 토지와의 관계

|            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1. 12. 31<br>이전 양도분 | 2022. 1. 1 이후<br>양도분 |
|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,<br>상업, 공업지역 내의 토지        | (5)배                   | (3)배                 |
| 도시지역       |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<br>역 내의 토지, 수도권 밖의<br>토지 | (5)배                   | (5)배                 |
| 도시지역 밖의 토지 |  | ( 10 )배                | ( 10 )배  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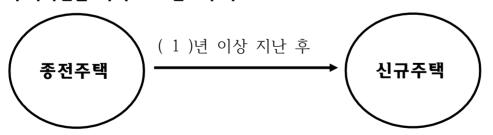
## 주택판정 : 사실상 현황

| 구            | 판 정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  | 양도사실이 확인되면 1주택 |                   |  |
| 공부상 주택을 영업용  | 영업용 건물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공부상 상가를 주거용  | 주거용 건물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| : 경우           | 각각 1주택 소유         |  |
|              | 토지분할 양도        | 나대지 양도            |  |
| 토지, 주택 분할 양도 | 주택분할 양도        |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 |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.      |  |

# 주택판정 : 사실상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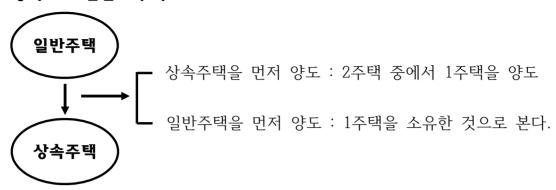
| 구 분        |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다가구주택      | 1.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: 단독주택        |
|            | 2. 각각의 매매단위로 양도 : 각각의 주택      |
| 2개의 주택을 같은 | 1. 먼저 양도한 주택 : 과세             |
| 날 동시에 양도   | 2. 나중 양도한 주택 :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|

###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2주택



- 1. 일반적 : 신규주택 취득 후 ( 3 )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
- 2.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존재 :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( 1 )년 이내에 해당주택으로 전입하고 ( 1 )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

#### 상속으로 인한 2주택



####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

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(60)세이상의 직계존속[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,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]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(10)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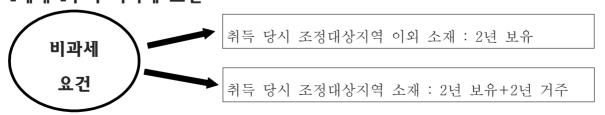
####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인한 2주택

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.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소 된 날로부터 (3)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한다.

#### 1세대 1주택 비과세

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(2) 년 이상인 것(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(2)년 이상인 것)을 말한다.

####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



#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

| 2014 | 년 5/1 | 2019년 | 2/1 | 2020년 | 12/20 | 2021년 | 1/5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  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
| A주택  | 취득    | B주택   | 취득  | B주택   | 양도    | A주택   | 양도  |

**2021년 1/5 A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** : 2014년 5/1부터 양도일까지

#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

| 2014년 | ₹ 5/1<br> | 2019년 | 2/1 | 2021년 | 1/5 | 2021년 | 5/10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|
| A주틱   | 대<br>취득   | B주택   | 취득  | B주택   | 양도  | A주택   | 양도   |

**2021년 5/10 A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**: 2021년 1/6일부터 양도일까지

# 보유기간 계산

| 취득 구분 |             | 보유기간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상속    | 같은 세대원 간 상속 | (같은 세대원으로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) |  |  |
|       |             | + ( 상속개시일 )부터 양도일       |  |  |
|       | 다른 세대원 간 상속 | ( 상속개시일 )부터 양도일         |  |  |
| 증여    | 같은 세대원 간 증여 | ( 증여자의 취득일 )부터 양도일      |  |  |
|       | 다른 세대원 간 증여 | (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 )부터 양도일 |  |  |
| 이혼    | 재산분할로 취득    | ( 당초 취득한 날 )부터 양도일      |  |  |
|       | 위자료로 취득     | ( 등기접수일 )부터 양도일         |  |  |

### 보유기간 계산

| ユ <u> </u>                    | 난   |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포함 여부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--|
| 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종전주택              |   | 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건축주택 |   |  |
| 소실.노후 등으로 재<br>경우             | 건축한 | 玊                 | 함 | 포함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| 玊     | 함 |  |
|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<br>따라 재건축한 경우 |     | 玊                 | 함 | 보유기간: 포함<br>거주기간: 포함하지<br>않음 | 포     | 함 |  |

#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

| 구 분 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건설임대주택       |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( 5 )년 이상 |
| 공공사업용 양도     |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불문               |
| 국외이주         | 출국일부터 ( 2 )년 이내에 양도          |
| 부득이한 사유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취학, 근무상 형편, | 양도일 현재 ( 1 )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  |
| 질병요양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양도소득세 계산구조

| 양도가액          | 양도가액           | 양도가액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(-) 취득가액      | (-) 취득가액       | (-) 취득가액        |
| (-) 필요경비      | (-) 필요경비       | <u>(-) 필요경비</u> |
| 양도차익          | 양도차익           | (양도차익)          |
| (-) 장기보유특별공제  | (-) (장기보유특별공제) | (-) 장기보유특별공제    |
| 양도소득금액        | 양도소득금액         | (양도소득금액)        |
| (-) 양도소득기본공제  | (-) (양도소득기본공제) | (-) 양도소득기본공제    |
| 양도소득과세표준      | 양도소득과세표준       | (양도소득과세표준)      |
| <u>(×) 세율</u> | <u>(×) 세율</u>  | <u>(×) 세율</u>   |
| 양도소득산출세액      | 양도소득산출세액       | (양도소득산출세액)      |

# 추계방법

- 양도가액의 추계결정
   매매사례가액 ) ⇒ ( 감정가액 ) ⇒ ( 기준시가 )
- 2. 취득가액의 추계결정( 매매사례가액 ) ⇒ ( 감정가액 ) ⇒ ( 환산취득가액 ) ⇒ ( 기준시가 )

#### 양도차익 산정원리

| 양도가액       |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실지양도가액     | 실지취득가액 ⇒ (매매사례가액) ⇒ (감정가액) ⇒ (환산 |
| [ 결시 장도/[학 | 취득가액) ⇒ (기준시가)                   |
| 피기기기기기기    | 실지취득가액 ⇒ (매매사례가액) ⇒ (감정가액) ⇒ (환산 |
| 매매사례가액     | 취득가액) ⇒ (기준시가)                   |
| 기가기기에      | 실지취득가액 ⇒ (매매사례가액) ⇒ (감정가액) ⇒ (환산 |
| 감정가액<br>   | 취득가액) ⇒ (기준시가)                   |
| 기준시가       | (기준시가)                           |